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 961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사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 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개요
 - 1) 사 무 명 :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
 - 2)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- 3) 필 요 성 :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사업 진흥을 위하여 출연 필요

4) 사무내용

-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조사 연구 및 전시·보급
- 디자인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
- 디자인의 국·내외 교류사업
- 패션 · 봉제산업 지원
-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
-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운영
- 나.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개요
 - 1) 소 재 지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
 - 2) 규 모 : 대지 3,191 m², 건물 5,937 m² (9층 건물)
 - 3) 전경 및 위치도

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서점덕 (☎ 2133-2706)